

1945년 패전 후 재조일본인의 귀결

-경성일본인세화회의 재산 문제와 식민지 지배 인식을 중심으로

박경민 _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일본 정부 · 경성일본인세화회의 한반도 정착 촉진과
재산 보호: 정착 희망자의 전반기
- III. 미군정 속 경성일본인세화회, 그리고 귀환:
정착 희망자의 후반기
- IV.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45년 패전 후 일본 정부와 재조일본인의 한반도 정착 추진 과정에 서 경성일본인세화회의 재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주목하며 고찰한다. 1945년 8월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자 총독부는 재조일본인의 정착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맞춰 재조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바로 경성일본인세화회였다. 당초 경성일본인세화회는 미군정청(USAMGIK)과 협 조하며 일본 귀환 희망자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한반도 정착 희망자의 재산 보호에 분주했다. 그러나 1945년 12월이 되자 일본인의 재산 몰수와 정착 희망자 의 귀환을 요구하는 미국의 방침이 확고해졌다. 이로 인해 경성일본인세화회를

* 본 논문은 朴敬珉, 「朝鮮縁故者と日本の対韓国外交の源流—『植民地財産の数字』に 収斂した認識と対応, 1945-1953」, 慶應義塾大学大学院博士学位請求論文, 2015의 제1장 을 번역하고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 을 보내 주신 심사자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비롯한 재조일본인의 초기 구상이 좌절됨에 따라 귀환한 그들의 재산은 '재외 재산의 보상 문제'로 일본 국내에서 부상하게 된다.

이처럼 분석해 본 결과, 일본 제국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착을 희망하며 재산을 보호하려는 일본 정부와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 도출되었다. 미군이 한반도로 진주하면서 드러낸 점령 정책의 사후 결정 방식은 총독부와 재조일본인 정착 희망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으나, 무엇보다 법령 제33호에 의거해서 미군정청이 일본인들의 사유 재산을 귀속·소유한 것이 금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큰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훗날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했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45년 패전 후 재조일본인의 재산 문제 처리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성일본인세화회를 비롯한 재조일본인의 귀결은 해방 후 한일 관계를 제약하는 전사(前史)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주제어

재조일본인, 경성일본인세화회, 재산 문제, 식민지 지배 인식, 정착, 귀환

I . 들어가며

본고의 목적은 1945년 패전 후 일본 정부와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의 한반도 정착 추진 과정에서 경성일본인세화회(京城日本人世話會)의 재산 문제¹⁾

1)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재산 문제'란, 미군정청(USAMGIK)이 한반도 북위 38도 이남 관할 구역의 일본 및 일본인(법인 포함) 재산을 법령 제33호(1945년 12월 6일자)에 의거해서 귀속(vested) 및 소유(owned)하게 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처럼 몰수된 재산은 한미 간의 '財産에 關한 最初協定'(1948년 9월 11일자)에 따라 한국 정부로 이양(transfer)됐지만,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문제시하는 재산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日本政府公開文書,

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 시기는 1945년 8월에 경성일본인세화회가 설립되는 시점부터 한반도에 계속 정착을 희망했던 재조일본인들에게 공식 귀환 명령이 내려지는 1946년 3월까지이다. 이를 미군이 한반도 38선 이남 지역으로 진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착 희망자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제국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착을 희망하며 재산을 보호하려는 일본 정부와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 도출된다. 이는 훗날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했던 재산청구권 문제가 1945년 패전 후 재조일본인의 재산 문제 처리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1945년 패전을 기점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의 일부로 귀환(引揚げ) 문제를 다루거나, 한반도에서 귀환하는 사례 연구로 귀환자 원호 단체로서의 경성일본인세화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²⁾ 즉 한반도에서 귀환한 일본인들이 국내에서 '재외 재산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두하게 되는 그 이전의 재산 문제의 기원을 경성일본인세화회의 인식과 대응에서 찾지 못한 측면이

『日韓特別取極の対象となる日本資産及び請求権について(1)』(文書番号 1563), 1-6쪽, <http://www.f8.wx301.smilestart.ne.jp/gji-all/gji/gji.htm> (검색일: 2017.4.30); 국가기록원, 『연표와 기록: 시대의 변화를 담다』,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49272290> (검색일: 2017.4.30)

2) 최영호, 『일본인 세화회: 식민지조선 일본인의 전후』, 논형, 2013; 이연식, 『조선을 떠나며: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최후』, 역사비평사, 2012; 노기영, 『해방 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한일민족문제연구』 10집, 2006, 125~160쪽; 増田弘 編著, 『大日本帝国の崩壊と引揚げ・復員』,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2; 加藤聖文, 『大日本帝国 崩壊 - 東アジアの1945年』, 中公新書, 2009; 小林英夫, 柴田善雅, 吉田千之輔 編著, 『戦後アジアにおける日本人団体 - 引揚げから企業進出まで』, ゆまに書房, 2008; 若槻泰雄, 『戦後引揚げの記録』, 時事通信社, 1995;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 米ソ両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げ』, 巖南堂書店, 1964; Barak Kushner, Sherzod Muminov ed, *The dismantling of Japan's empire in East Asia: de imperialization, postwar legitimation and imperial afterlife* (Routledge, 2017); Lori Watt, *When empire comes home: repatriation and reintegration in postwar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있다. 아울러 재조일본인의 '기억'을 포함한 식민지 지배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패전 후 재조일본인의 재산 문제와 연동되는 인식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³⁾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해방 후 한반도에 계속해서 정주하여 재산 보호를 추구했던 재조일본인, 그 중에서도 중심 역할을 수행했던 경성일본인세화회의 활동과 식민지 지배 인식을 분석하고, 거기에 1953년 10월 제3차 한일회담이 '구보타 망언(久保田発言)'으로 결렬되는 역사적 흐름의 원점이 형성되었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45년 패전 후 경성일본인세화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고찰하면서 재산 문제를 둘러싼 활동과 그 속에 내재된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을 분석한다.

1945년 8월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자 일본 정부·조선총독부(이하 '총독부'로 약칭)는 재조일본인의 현지 정착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 방침에 맞춰 재조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바로 경성일본인세화회였다. 당초 경성일본인세화회는 미군정청(USAMGIK)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일본 귀환 희망자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한반도 정착 희망자의 재산 보호에 분주했다. 그러나 1945년 12월이 되자 일본인의 재산 몰수와 정착 희망자의 귀환을 요구하는 미국의 방침이 확고해졌다. 이로 인해 경성일본인세화회를 비롯한 재조일본인의 초기 구상이 좌절됨에 따라 귀환한 그들의 재산은 '재외 재산의 보상 문제'로 일본 국내에서 부상하게 된다.

이 문제를 둘러싼 국내의 대립 구도 속에서 구 일본 제국의 식민자에

3) 이형식, 「패전 후 조선통치관계자의 조선통치사편찬」, 『東洋史學研究』 131집, 2015, 475~510쪽; 기유정, 「일본제국과 제국적 주체의 정체성: 『綠旗』(『錄人』) 속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국체론과 정체성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학』 35집, 2012, 119~154쪽; 황선익, 「해방 전후 在韓日本人의 敗戰 경험과 한국 인식: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4집, 2010, 1089~1117쪽; 淺野豊美, 「折りたたまれた帝国—戦後日本における『引揚』の記憶と戦後的価値」, 細谷千博・入江昭・大芝亮 編, 『記憶としてのパールハーバー』, ミネルヴァ書房, 2004.

게 쏟아진 ‘제국주의적 침략의 앞잡이(帝國主義的侵略の走狗)’ ‘자본주의적 착취의 꼭두각시(資本主義的搾取の傀儡)’라는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재조귀환자가 재외재산조사회(在外財産調査會)를 설치해서 식민지 조선의 재산을 수치화한다.⁴⁾ 이는 그들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작업이었으며, 여기서 산출된 재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대한(對韓) 청구권을 제기하게 된다.⁵⁾ 이처럼 본 논문에는 패전 후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 내재된 재산 문제가 한일회담의 재산청구권 문제로 연결되면서 해방 후 한일 관계를 구속시키는 함의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1945년 패전 후 재산 문제와 연동된 일본 정부와 경성일본인세화회의의 식민지 지배 인식에 초점을 맞춰서 실증하도록 한다.

Ⅱ . 일본 정부·경성일본인세화회의 한반도 정착 촉진과 재산 보호: 정착 희망자의 전반기

1945년 8월 패전을 맞이한 재조일본인⁶⁾은 한반도에 정착하기 위해

4) 재외재산조사회(在外財産調査會)의 설치 경위와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길 바람. 朴敬珉, 「海外事業者の在外財産の補償要求と植民地認識, 1945-1948年-朝鮮事業者會を中心」, 『法学政治学論究-法律·政治·社会』 108号, 2016, 1~33쪽. http://koara.lib.keio.ac.jp/xoonips/modules/xoonips/detail.php?koara_id=AN10086101-20160315-0001 (검색일: 2017.4.30).

5) 朴敬珉(2015), 제4장.

6) 일본 본토의 총인구 대비 공무 및 자유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은 6.8%인 반면에 한반도에서는 그 비율이 39.5%였다. 이 수치의 차이는 총독부 관료 및 사업자 등이 한반도의 특권 계층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흥미로운 점은 경성일본인세화회에 소속된 민간 유력자의 대다수가 총독부

재산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한반도의 식민 통치는 국제 사회에서 공인된 합법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영토에서 축적한 재산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실적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조선과 일본, 두 민족은 평화적인 경제 발전을 내걸며 협력했던 사이였고 일본인이 이에 공헌했던 사실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이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두 민족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것도 아니었다는 식민지 지배 인식이 재조일본인에게는 일반적이었으며 패전 뒤에 향후 방향을 설정할 때의 기본 논리였다.⁷⁾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논리적인 식민지 지배 인식을 전제로 하여 계속해서 한반도에 정착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간주하며 재산 보호에 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조일본인이 설립한 단체가 바로 경성일본인세화회였다. 이 단체가 한반도에서의 정착 촉진과 재산 보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패전 후에도 변함없는 식민지 지배 인식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도 재조일본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식민지 지배 인식을 바탕으로 종전 후 방침을 제시했으며, 이 방침에는 이전처럼 한반도에서 정착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부와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은 유사성을 띄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종전 후 방침(1945년 8월 14일자)은 한반도에서 '되도록 정착하는 방침'과 '생명 재산의 보호'로 정해짐으로써 총독부에게 재조일본인에 대한 보호 및 지도가 하달되었다.⁸⁾ 이에 맞춰 경성일본인

출신의 관료였다는 사실이다. 최영호(2013), 46~47쪽.

7) 大藏省管理局 編,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大藏省管理局, 1948, 1~3쪽.

8) 加藤聖文 監修·編集, 『海外引揚關係史料集成-国外篇 第17卷 「三ヶ国宣言条項受諾に關する在外現地機關に対する訓令」「終戦後に於ける在外同胞の概況」他』, ゆまに書房, 2002, 9~10쪽. 일본 정부의 도쿄 시게노리(東郷茂徳) 외무대신(대동아 대신 겸임)이 재외 공관 앞으로 '3개국 선언 조항 수락에 관한 재외 현지 기관에 대한 훈령'을 하달한 시점은 8월 14일이었다.

세화회⁹⁾(1945년 8월 18일)가 설립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경성일본인세화회는 일본 정부와 재조일본인 사이에서 정착 촉진과 재산 보호를 일차적으로 설립된 관민 협조의 산물이었다.¹⁰⁾ 이러한 성격을 띤 경성일본인세화회의 전반기 활동은 계속해서 한반도에 정착하기 위해서 재조일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되었다.

앞서 언급한 일본 정부의 8월 14일자 훈령에 따라 총독부는 재조일본인의 정착 촉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두 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첫 번째는 조선 측 정치 지도자의 협력을 얻는 대책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8월 15일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정무총감은 여운형과의 회담에서 치안 유지의 협력을 요청했으나 조선건국준비위원회(建準)의 자주적 행동과 내셔널리즘이 고양됨에 따라 이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총독부는 재조일본인 유력자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

9) 회장은 호즈미 신로쿠로(穂積貞六郎: 京城電気会社社長·前殖産局長), 부회장은 와타나베 도요히코(渡辺豊日子: 朝鮮重要物資営団理事長·前学務局長)와 구보타 유타카(久保田豊: 朝鮮電業社長)였다. ‘경성내지인세화회규약(창립 당시)’ 제5조에 따르면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실권력을 갖춘 각계 대표로 조직’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상임위원은 이토 겐로(伊藤憲郎: 国民総力朝鮮連盟総務部長·前總督府事務官兼任法務局法務課), 이주인 가네오(伊集院兼雄: 朝日新聞京城支局長), 호즈미, 와타나베, 와타나베 시노부(渡辺忍: 朝鮮食糧営団理事長·前農林局長), 가네코 데이이치(金子定一: 陸軍少將·興亜総本部大陸局長), 다나카 데쓰사부로(田中鉄三郎: 朝鮮銀行總裁), 나카야스 요사쿠(中保与作: 京城日報社副社長兼主筆),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京城大学教授), 히토미 지로(人見次郎: 朝鮮商工会議所会頭·前鐵道局長), 유노무라 다쓰지로(湯村辰次郎: 朝鮮纖維産業会社社長·前農林局長), 고타키 모토이(小瀧基: 前殖産局長), 후루이치 스스무(古市進: 京城府尹), 야사이 도시오(安井俊雄: 京城日報副社長兼京城日報支配人), 야마구치 시게마사(山口重政: 朝鮮殖産銀行副頭取), 구보타, 内地三銀行支店長 등이었다. 사무국 직원(1945년 9월 1일)으로 사무국장에 가네코, 차장에 이토, 비서에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緑旗日本文化研究所員), 총무부장에 스키야마 시게카즈(杉山茂一: 朝鮮商工經濟會常務理事), 사업부장에 후루이치, 보도과장에 야사이 그리고 조사부장에 스즈키가 취임했다. 加藤聖文 監修・編集, 『海外引揚関係史料集成-国外編 第19卷 朝鮮篇2 「終戦後朝鮮における日本人の状況および引揚」(二)」, ゆまに書房, 2002, 19~22쪽.

10) 이연식(2012), 74쪽.

를 행동에 옮기며 그들과의 회의석상에서 정부 기구의 역할을 분담해 주도록 의뢰했다. 이는 엔도·여운형 회담에 뒤이어 일본 측 유력자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¹¹⁾ 그러나 이 또한 구체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좌절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 京城電氣會社社長·前殖産局長)에게 대응책을 마련하게끔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 이주인 가네오(伊集院兼雄: 朝日新聞京城支局長)의 전화였다. 이주인 지국장이 제시한 것은 8월 17일 저녁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총독과 관저에서 면담시 강조되었던 민간 레벨의 연락 기관 설치를 구체화하는 것이었다.¹²⁾

이에 따라 그다음 날 즉시 재조일본인 유력자들은 호즈미의 집무실에 모여 일본인 단체 결성에 대해 협의했다.¹³⁾ 그 결과 호즈미가 회장으로, 구보타 유타카(久保田豊: 朝鮮電業社長)와 와타나베 도요히코(渡辺豊日子: 朝鮮重要物資営団理事長·前学務局長)가 부회장으로 내정되었다. 그날 경성일본인세화회 지도부는 총독부로 향하여 세화회의 취의서와 규약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었다. 뒤이어 조선군관구사령부와 헌병대사령부도 이들의 취지에 동의하며, 군부는 즉각 군용 전화를 이용해서 지역별 관공서에 일본인세화회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맞춰 총독부도 기획과장 명의로 각 도지사 앞으로 '내지인세화회 설립에 관한 건'의 지시문을 하달하여 지역별 일본인 단체를 조직하도록 재촉했다. 이처럼 경성일본인세화회는 총독부와 군부의 지원하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¹⁴⁾

전국적으로 한반도 정착 희망자와 일본 귀환 희망자가 혼재하는 가

11) 이 자리에 참석한 재조일본인 유력자는 호즈미, 유노무라, 와타나베 시노부(渡辺忍), 히토미였다. 森田芳夫(1964), 132쪽.

12) 穂積真六郎, 『わが生涯を朝鮮に』, ゆまに書房, 2010, 190쪽; 森田芳夫(1964), 133쪽; 田村吉雄 編, 『秘録大東亞戦史 朝鮮篇』, 富士書苑, 1953, 36-37쪽.

13) 森田芳夫(1964), 133쪽.

14) 위의 책, 132-134쪽.

운데, 경성일본인세화회 내부에서는 상당수가 재산 보장과 정착을 희망했으며 더 나아가 장래에 한반도 거류민단이 되는 기대감까지 갖고 있었다.¹⁵⁾ 이는 경성일본인세화회 제1회 위원회(1945년 8월 25일), 호즈미 회장의 인사말에서도 드러났다.

우리의 생명·재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하루 빨리 냉정을 되찾아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남아 있을 사람은 남게끔 하고 싶다……내지에 돌아갈 사람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 아울러 돌아가는 것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 되도록 남게끔 그분들도 보살피 드리고 싶다. 어느 쪽이든 생활 문제,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장래에 거류민단으로 발전할지도 모릅니다……¹⁶⁾

이처럼 경성일본인세화회는 재산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재조일본인들이 되도록 한반도에 정착하게끔 촉구함과 동시에 귀환 희망자들도 지원할 방침을 제시하며, 재조일본인을 정착과 귀환으로 분리해서 대응할 것을 상정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취의서에는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조선을 위해서는 좋은 협력자로서 그 영광스런 발전에 전폭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라고 명기했다.¹⁷⁾ 세화회는 장차 독립하게 될 조선에 이전처럼 ‘공존공영’을 호소하듯, 한반도에 정착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재조일본인의 의지를 일본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었다. 내무성 관리국은 8월 24일에 ‘지난날의 통치 성과를 돌이켜 볼 때 장래를 생각해서 되도록 현지에서 공존친화(共存親和)할 것을 방침으로 내세웠다. 아

15)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編, 『資料所在調査結果報告書—資料が示す今次大戦における恩給欠格者, 戦後強制抑留者及び海外引揚者の労苦』,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1993, 197쪽; 今村勲, 『京城六月—私の敗戦日記』, 出版者記名なし, 1981, 140~141쪽.

16) 森田芳夫(1964), 135~136쪽.

17) 위의 책, 137쪽.

올려 그 행동 요령으로도 ‘현지에서 산업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 되도록 현지에 남아서 공존공영’할 것을 제시했다.¹⁸⁾ 이에 맞춰 총독부는 종전사무처리본부(終戰事務處理本部)를 설치했다. 이 본부는 총무부·절충부·정리부·보호부를 갖추었고 그 중에서도 보호부는 일본인 귀환 준비, 잔류 일본인 단체 조직, 개인 및 법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¹⁹⁾ 이처럼 보호부의 목적도 재조일본인을 정착과 귀환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면서 권익 옹호의 핵심인 재산 보호를 명시했던 점은 경성일본인사회회와 일맥상통했다.

보호부 차장에 취임한 하라다 다이로쿠(原田大六: 總督府官房企画課長)가 일본인 귀환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책정했을 때의 귀환 희망자는 약 65만 명으로 상정됐었다.²⁰⁾ 이는 당시 80만 명 정도의 재조일본인 중 귀환 희망자를 빼면, 한반도 정착을 희망하는 인원은 총 15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정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재조일본인의 정착 희망자수를 산출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한반도 정착 가능성을 당연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경성

18) 内務省管理局, 「戦争終結ニ伴フ朝鮮台湾及樺太在内地人ニ関スル善後措置要領(案)」(1945년 8월 24일), 「太平洋戦争終結による在外邦人保護引揚関係雑件: 国内受入体制の整備関係, 輸送関係」(日本外務省外交記録公開 MF/CR番号 K'-0003); 【極秘】電報案 朝鮮政務總監宛(1945년 8월 24일), 「善後措置及び各地状況関係(朝鮮)第7卷」(日本外務省外交記録公開 MF/CR番号 A'-0117); 内務次官, 「終戦処理ニ伴フ在外地邦人權益ノ保持存続ニ関スル件」(1945년 8월 31일, 朝鮮總督府政務總監宛指令), 『阿部言行関係文書』(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蔵, マイクロフィルム).

19) 보호부 부장은 시라이시 고지로(白石光治郎: 總督府農商局長), 차장은 하라다 다이로쿠(原田大六: 總督府官房企画課長)였다. 朝鮮總督府, 「邦人引揚ニ関スル指導連絡機關ノ設置ノ件」, 「朝鮮總督府終戰事務處理本部設置申請ノ件」(日本外務省外交記録公開 MF/CR番号 K'-0002); 大藏省財政史室 編,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第一卷』, 東洋經濟新報社, 1984, 218쪽.

20) 原田大六, 「終戦に伴う引揚事務處理」, 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編 第一卷 日本統治の終焉』, 巖南堂書店, 1979, 146~159쪽.

일본인세화회와 동일하게 대응했던 것이다.

한편 경성일본인세화회도 정부 당국과 마찬가지로 재조일본인들에게 계속 정착하도록 호소했다. 세화회는 회보를 통해 한반도에 남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표명하면서 “신생 조선을 위해 힘내라.”고 그들을 독려했다. 이와 동시에 기어코 일본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자들에게는 “내지 귀환자에게 경고한다.”는 강경한 어조를 띠며 ‘자숙’을 촉구했다.²¹⁾ 이 같은 문구는 세화회에서 보도과장을 맡았던 야스이 도시오(安井俊雄: 京城日報副社長兼京城日報支配人)를 비롯한 언론계 재조일본인이 표출했던 식민지 지배 인식이었다. 세화회의 회보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 일본인은 조선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야 한다.²²⁾
- 경성내지인세화회는 조선에 남아서 동포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친구인 조선의 발전에 협력하려는 내지인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도울 것이다.²³⁾
- 내지로 돌아가면 외지에서 지냈던 것과 달리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 내지로 향한다는 사람들이 재조일본인 중에서도 많은 것 같으나 내지도 미군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²⁴⁾
- 군이나 관의 권위도 머지않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재조일본인은 확고한 결심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나만 편하고자 하는 악한 개인주의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내지인세화회는 장래에 일본인을 위해 남는 조직이다. 모

21) 京城日本人世話會, 『京城内地人世話會々報』, 第8号, 1945年 9月 10日.

22) 京城日本人世話會, 『京城内地人世話會々報』, 第1号, 1945年 9月 2日.

23) 京城日本人世話會, 『京城内地人世話會々報』, 第2号, 1945年 9月 3日.

24) 京城日本人世話會, 『京城内地人世話會々報』, 第3号, 1945年 9月 5日.

든 내지인은 하루속히 세화회에 결집하여 질서 정연하게 새로운 생활에 임해야 한다.²⁵⁾

- 다 함께 끝까지 '신생 조선'에 협력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조선을 위해 분발하여 동양 평화의 일익을 담당하게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²⁶⁾

이처럼 경성일본인세화회는 장래에 새롭게 태어날 조선이 재조일본인들에게는 '친숙한 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반도에 남아서 공헌하도록 호소했다. 더욱이 세화회는 패전 후 한반도에서 '새로운 일본인의 입장'을 내세우며 "나는 끝까지 조선에 머물러 남겠다."고 결의를 다졌다.²⁷⁾ 이러한 의미에서 경성일본인세화회는 패전 후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주체였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세화회는 일본 정부의 초기 방침에 따라 정착을 추진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정청의 일본인 송환 계획에 관여하려고 했다.

Ⅲ. 미군정 속 경성일본인세화회, 그리고 귀환: 정착 희망자의 후반기

총독부는 미군의 한반도 북위 38도 이남 점령 방식에서 현 행정 기구의 활용 여부에 주목하고 있었다.²⁸⁾ 미군 선발대가 도착한 후인 9월 7일,

25) 京城日本人世話会, 『京城内地人世話会々報』, 第5号, 1945年 9月 7日.

26) 京城日本人世話会, 『京城内地人世話会々報』, 第8号, 1945年 9月 10日.

27) 『朝鮮商工新聞』, 1945年 8月 16日(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友邦文庫, 請求記号: KD23-26); 京城日本人世話会, 『京城内地人世話会々報』, 第5号, 1945年 9月 7日.

28) 山名酒喜男,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録(一)(終戦前後における朝鮮事業概要)旧朝鮮總督府官房総務課長山名酒喜男手記』, 友邦協會, 1956, 17쪽.

총독부 수뇌부와와의 첫 공식 회담에서 점령 방식이 언급되었다. 미군의 해리스(Charles S. Harris) 준장은 “현 관청에서 집무 중인 공무원 및 관청의 건물 설비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엔도 정무총감은 “조선에 군정을 실시한다는 의향인가?”라고 반문하자, 해리스 준장은 군정 실시라는 답은 회피하면서도 “이전처럼 총독·총감의 통솔하에 두면서 미군 사령관이 행정을 관리·감독”할 의향을 내비쳤다. 이에 엔도 정무총감은 “본건은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귀하의 의사를 서면으로 기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으나 즉시 거절당했다. 이번에는 동석해 있던 야마나 미키오(山名酒喜男) 총무과장이 총독의 재량권과 관련지어 미군 측의 의향을 재차 타진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준장은 “미군 사령관은 행정의 기본 방침을 총독에게 하달하고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총독에게 결재권을 부여”한다고 답했다. 이 회담은 미국의 38도 이남 지역에서의 점령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드러낸 반면에 총독부 수뇌부에게는 미군이 현 행정 기구를 존속시키고 총독 통치하에 점령을 실시하려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했다.²⁹⁾

1945년 9월 9일 항복 문서 조인식이 거행되고, 미군은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의 포고 제1호에서 3호를 발표했다.³⁰⁾ 이어서 하지(John R. Hodge) 사령관은 조선 민중을 향한 성명에서 “항복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정부의 기구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³¹⁾ 총독부를 통한 점령 통치를 공식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 지도자 측에서 행정 기구를 조선인에게 넘겨주도록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미군은 이를 반영하는 형태로 행정 담당자를 조선인으로 대체해갔다.³²⁾ 이에 따라 아베 총독이 해임되는 것을 시작으로 총독부는 해체

29) 山名酒喜男(1956), 23~27쪽; 森田芳夫(1964), 272~273쪽.

30) 「太平洋米國陸軍總司令部布告第一-第三号」(1945年 9月 7日), 『阿部(信行)關係文書』(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蔵); 『京城日報』, 1945年 9月 11日.

31) 『京城日報』, 1945年 9月 10日; 山名酒喜男(1956), 28~32쪽.

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군정청이 설치됨에 따라 호즈미 경성일본인세화회장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외무대신에게 “조선에서는 주지하다시피……일본인세화회만 있을 뿐, 따라서……속히 일본 정부의 교섭 기구를 경성(京城)에 설치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하며 일본 정부의 교섭 기구를 설치해 주도록 요청했다.³³⁾ 그러나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세화회는 총독부의 종전 처리를 대신하면서 미군 측과 직접 교섭에 임하게 되었다.

우선 경성일본인세화회의 지도부는 미군이 발표한 포고 제1호(1945년 9월 7일자)의 제4조에서 ‘주민의 소유권은 이를 존중한다’는 그 ‘주민’에 일본인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³⁴⁾ 이에 세화회는 아놀드(Archibald V. Arnold) 군정장관을 만나 “일본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받고 재산 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³⁵⁾ 세화회의 기존 조직 체계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총무부·사업부·조사부를 두는 1국 3부 7과 제였으나, 2명의 부회장이 각각 직할하는 사무국과 문화국으로 나누고 총무부를 별도로 두는 2국 7부제로 개편되었다. 이 중 사무국의 원호부에서는 치안 유지, 일본인의 재산 관리 및 처분·수송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재조일본인에 대한 지원 체제를 정비했다. 이와 동시에 섭외부를 설치해서 ‘관계 당국과의 교섭 및 외부와의 연락 협조·교섭에 관한 사항 조정, 중재 등에 관한 사항’ 업무를 지정하며 미군 측과의 협조적인 관계 구축을 중시했다.³⁶⁾

한편 미군정청은 법령 제2호(1945년 9월 25일자)를 발표하여 일본국

32) 森田芳夫(1964), 289쪽; 『京城日報』, 1945년 9월 12~16일.

33) 『朝鮮總督府·外務省往復文書』, 森田芳夫·長田かな子(1979), 123쪽.

34) 『太平洋米國陸軍總司令部布告第一一第三号』(1945년 9월 7일), 『阿部(言行關係文書)』(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蔵).

35) 森田芳夫(1964), 928쪽.

36) 加藤聖文 監修·編集(2002), 39~40쪽.

의 국·공유 재산을 몰수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국·공유 재산을 제외한 일본인의 사유 재산은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군정청은 일본인의 사유 재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으며 그 일례로 미군정청을 통한 일본인 재산의 정식 거래 방법을 제시했었다. 이는 일본인의 사유 재산을 미국 측이 인정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³⁷⁾ 다른 한편으로 워싱턴에서는 'SWNCC 176/8: 북위 38도 이남의 한반도 내 민사행정에 대하여 미육군태평양지구사령관에게 보내는 초기 기본 지령'(1945년 10월 13일자)이 확정되어 한반도 38선 이남 지역에서의 점령 방침으로 내세워졌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정치적·행정적 분리'가 정책 결정되었음을 의미했다.³⁸⁾ 이 지령은 10월 17일에 맥아더(Douglas MacArthur) 최고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³⁹⁾

이와 시기를 같이하며 38선 이남에서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가 실시되어 송환 계획이 궤도에 오르면서 민간인의 일본 송환 문제도 부상하고 있었다. 총독부의 해체에 이어 일본군도 무장 해제되어 송환되는 현실은 경성일본인세화회를 비롯한 한반도 정착 희망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세화회 지도부는 10월 17일 하지 사령관과 회담 자리를 마련하여 한반도에서의 정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구보타 부회장: 일본인이 당면한 문제로, 첫째 조선에 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되도록 본국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37) 『자유신문』, 1945년 10월 12일.

38)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 'SWNCC 176/8;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BASIC INITIAL DIRECTIVE FOR CIVIL AFFAIRS IN KOREA'(13 October 194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swncc_008_0110 (검색일: 2017.4.30).

39)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diplomatic papers, 1945, vol.6,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p.1073; 宋炳卷, 『東アジア地域主義と韓日米關係』,クレイン, 2015, 123~128쪽.

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미군에게 협력해서 되도록 남길 원하는 특수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돌아가야 하는지, 셋째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남아야 하는지에 대해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지 사령관: 이는 저에게도 현안 문제이며 미해결 과제입니다. 이 해결을 위해 일본인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조선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도 일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게 되는 일본 사람들을 조선인이 혹시나 학대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에 맥아더 장군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부 귀환시킬지 일부 남게 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습니다.⁴⁰⁾

실제로 하지 사령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 회답이 마련된 10월 17일은 맥아더 사령관이 워싱턴으로부터 'SWNCC176/8'을 건네받은 날짜와 같았다. 즉 하지 사령관은 도쿄의 GHQ/SCAP으로부터 일본과 조선의 '정치적·행정적 분리'라는 워싱턴의 정책 결정을 전달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사령관은 조선인의 보복 행위가 일본인의 정착을 곤란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회답에 동석했던 호즈미 회장은 후일 이 같은 하지 사령관의 발언을 "조선인의 감정 차원에서 보면 일본인이 남는 건 곤란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얘기였다고 회고했다.⁴¹⁾ 호즈미와 같은 재조일본인조차 조선인의 대일 감정이 좋든 싫든 간에 그 감정이 일본인의 한반도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과 일본 두 민족은 평화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한 사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호즈미는 하지 사령관의 이야기를 그 '정도'로만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성일본인세화회는 미

40) 森田芳夫(1964), 354~355쪽.

41) 朝鮮鈔揚同胞世話會, 『引揚同胞』, 第1卷3·4号, 1946年 7月 1日, 29쪽.

군정청이 실시하는 일본인 송환 계획에 보조를 맞추며 협력하고 있었다.

한편 미군정청에서의 귀환 업무 담당 부서는 난민과(Displaced Persons Division)였다. 난민과 과장으로 취임한 게인(William J. Gane) 중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인 송환을 실시하는 첫 번째 이유로 ‘일본인에게 학대받은 조선인은 일본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일본이 앞으로 또 다시 확장 정책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미군 측의 인식은 재조일본인의 인식과 어긋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인 중위는 이 보고서에서 미군의 비용 편익을 고려하여 일본인 송환 업무에 세화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제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성일본인세화회가 미군정청으로부터 일본인 귀환 업무 단체로 인정받고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²⁾

세화회가 귀환 업무를 지원하던 가운데 1945년 12월 7일에 ‘일본의 중간 배상 계획에 관한 폴리 대사 성명’⁴³⁾이 발표되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분리시키는 점령 방침 ‘SWNCC 176/8’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성명이었다. 이에 맞춰 법령 제33호(1945년 12월 6일자)가 발표됨에 따라 한반도 38선 이남 관할 구역에 소재한 일본국 재산을 포함해서 ‘일본인의 사유 재산’이 미군정청에게 귀속(vested) 및 소유(owned)되었다.⁴⁴⁾ 이 소급법은 경성일본인세화회를 비롯한 재조일본인의 정착 의지를 꺾었고, 환언하면 그들의 정착 의지를 뒷받침했던 재산 보호라는 기본 조건이

42) 米国国立公文書館(RG 407), “Repatriation from 25 September 1945 to 31 December 1945” Prepared by William J. Gane, Capt. A/C, HQ., USAMGIK, 1947/ボックス番号: 2089,フォルダ番号: 10; 『米軍政庁実施の日本人送還』,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編 第二卷 南朝鮮地域の引揚と日本人世話会の活動』, 巖南堂書店, 1980, 3~14쪽; 최영호(2013), 126~129쪽.

43) 賠償庁・外務省 共編, 『対日賠償文書集-第一卷/重要決定・渉外局発表・賠償指定関係指令』, 賠償庁, 1951, 1쪽.

44) 日本政府公開文書, 「日韓特別取極の対象となる日本資産及び請求権について(1)」, 文書番号 1563, 3-6쪽(각주 1번과 동일한 출처임).

상실된 것을 의미했다. 이 같은 사태에 직면한 호즈미 회장은 미군 측에 거듭 항의했지만 본국에서 내려진 명령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패전국의 입장이란 너무나 의지할 게 못 된다.”는 허무한 심경을 드러냈다.⁴⁵⁾

1945년 12월 12일에는 법령 제33호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의 재산관리과 직원이 일본인의 위탁 수하물을 일방적으로 몰수했다. 이에 대해 호즈미 회장은 미군정청에게 위탁 수하물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고 도쿄의 맥아더 최고사령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보냈으나 어떤 대답도 받지 못했다.⁴⁶⁾ 한편 아놀드 군정장관은 26일에 미군 점령 지역의 일본인 재산을 모두 몰수했다는 발표와 함께 “조선에서 일본의 지배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⁴⁷⁾ 다음해 1946년 1월에는 GHQ/SCAP 민간정보교육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이 경성일본인 세화회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외지에 있는 일본인 모두 본국으로 귀환시킨다.”고 단언했다. 추가적으로 미군정청은 세화회에게 “금후 2주 내로 38선 이남의 일본인은 군정청의 직간접 사무 담당자 1000명과 그 가족을 포함한 4000명을 제외하고 전부 철퇴하라.”는 명령을 전달했다.⁴⁸⁾ 이에 세화회도 정착 희망자들에게 “동포 여러분, 속히 귀환하시오!!”라는 권고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⁴⁹⁾ 2월에 접어들면서는 세화회 직원을 줄이라는 명령까지 하달되었고 3월에는 세화회 앞으로 군정장관 명령이 정식으로 내려졌다.⁵⁰⁾ 이 시기에 이르러 ‘돌아가고픈 일본인을 위해’ 달리던 귀환 열차는 갑작스레 ‘일본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움직이는 열차로 변하고 있었다.⁵¹⁾

45) 穂積真六郎(2010), 2~7쪽.

46) 森田芳夫(1964), 966~969쪽.

47) 『자유신문』, 1945년 12월 27일.

48) 田村吉雄 編(1953), 60쪽.

49) 京城日本人世話会, 『京城日本人世話会々報』, 第116号, 1946年 1月 24日.

50) 森田芳夫(1964), 397~401·415쪽.

IV. 나오며

경성일본인세화회의 설립 과정을 비롯해서 그들의 재산 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을 분석해 본 결과, 일본 제국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착을 희망하며 재산을 보호하려는 일본 정부와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 도출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1945년 패전 후 하나의 에피소드로 치부되기 쉬운 귀환 문제를 경성일본인세화회의 정착 추진과 재산 보호라는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재산과 연동되는 식민지 지배 인식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 본 것이다. 이처럼 살펴봤을 때 일본 정부와 미군정청의 각기 다른 방침 아래 재조일본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정착은 좌절되었지만, 그들의 식민지 지배 인식만큼은 온전하게 남았다.

비록 패전 후 일본 정부와 재조일본인이 추구했던 한반도 정착과 재산 보호라는 초기 구상은 좌절되었지만, 이 구상은 재조일본인이 귀환함에 따라 '재외 재산의 보상 문제'로 일본 국내에서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재조귀환자가 관민 협조의 틀을 재구축하면서 변용된다. 즉 총독부 출신 관료와 재조귀환자 간의 연속되는 접점에 따라 구 총독부 도쿄사무소(朝鮮關係殘務整理事務所)를 중심축으로 조선인양동포세화회(朝鮮引揚同胞世話會)와 조선사업자회(朝鮮事業者會)에게 재외 재산 문제에 대한 역할을 분담시키며 대응을 모색하게 된다. 재산을 보상받기 위한 그들의 초기 목적은 GHQ/SCAP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지배적인 식민 통치 비판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 위한 '평화적'인 식민 통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간다. 바로 여기에 일본 정부가 가담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재산을 수치화하는 작업에 재조귀환자가 영향을 끼치게 된다.⁵²⁾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고려했을 때 훗날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양국

51) 田村吉雄 編(1953), 60쪽.

52) 朴敬珉(2015), 제2장~제3장.

이 격렬하게 대립했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45년 패전 후 재조일본인의 재산 문제 처리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성일본인사회회를 비롯한 재조일본인의 귀결은 해방 후 한일 관계를 제약하는 전사(前史)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日本空團**

논문 투고일 : 2017년 5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17년 6월 2일

게재 확정일 : 2017년 6월 6일

참고문헌

〈1차 자료〉

- 국가기록원, 『연표와 기록: 시대의 변화를 담다』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49272290> (검색일: 2017. 4. 30).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swncc_008_0110 (검색일: 2017. 4. 30).
- 今村勲, 『京城六カ月一私の敗戦日記』, 出版者記名なし, 1981.
- 大藏省管理局 編,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大藏省管理局, 1948.
- 加藤聖文 監修·編集, 『海外引揚関係史料集成-国外篇 第17卷 「三ヶ国宣言条項受諾に関する在外現地機関に対する訓令」 「終戦後に於ける在外同胞の概況」他』, ゆまに書房, 2002.
- 加藤聖文 監修·編集, 『海外引揚関係史料集成-国外編 第19卷 朝鮮篇2 「終戦後朝鮮における日本人の状況および引揚(二)」』, ゆまに書房, 2002.
- 日本政府公開文書(日韓会谈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 <http://www.f8.wx301.smilestart.ne.jp/index.html> (검색일: 2017. 4. 30).
- 日本外務省外交記録公開, MF/CR番号 A¹-0117, K¹-0002, K²-0003.
- 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蔵, 『阿部信行関係文書』.
- 京城日本人世話会, 『京城内地人世話会々報』.
- 朝鮮引揚同胞世話会, 『引揚同胞』.
- 賠償庁·外務省 共編, 『対日賠償文書集-第一巻』, 賠償庁, 1951.
-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編, 『資料所在調査結果報告書-資料が示す今次大戦における恩給欠格者, 戦後強制抑留者及び海外引揚者の労苦』,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1993.
- 穂積真六郎, 『わが生涯を朝鮮に』, ゆまに書房, 2010.
- 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編 第一巻 日本統治の終焉』, 巖南堂書店, 1979.
- 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 『朝鮮終戦の記録-資料編 第二巻 南朝鮮地域の引揚と日本人世話会の活動』, 巖南堂書店, 1980.
- 山名酒喜男, 『朝鮮総督府終政の記録(一)(終戦前後における朝鮮事業概要)旧朝鮮総督府官房総務課長山名酒喜男手記』, 友邦協会, 1956.

米国立公文書館(RG 407), "Repatriation from 25 September 1945 to 31 December 1945" Prepared by William J. Gane, Capt. A/C, HQ., USAMGIK, 1947/ボックス番号: 2089, フォルダ番号: 10.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diplomatic papers, 1945, vol.6,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자유신문』, 『京城日報』, 『朝鮮商工新聞』.

〈2차 자료〉

기유정, 「일본제국과 제국적 주체의 정체성: 『綠旗』(『錄人』) 속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국체론과 정체성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학』 35집, 2012.

노기영, 「해방 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한일민족문제연구』 10집, 2006.

이연식, 『조선을 떠나며: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최후』, 역사비평사, 2012.

이형식, 「패전 후 조선통치관계자의 조선통치사편찬」, 『東洋史學研究』 131집, 2015.

최영호, 『일본인 세화회: 식민지조선 일본인의 전후』, 논형, 2013.

황선익, 「해방 전후 在韓日本人의 敗戰 경험과 한국 인식: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4집, 2010.

淺野豊美, 「折りたたまれた帝国—戦後日本における『引揚』の記憶と戦後の価値」, 細谷千博・入江昭・大芝亮 編, 『記憶としてのパールハーバー』, ミネルヴァ書房, 2004.

大蔵省財政史室 編,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第一巻』, 東洋経済新報社, 1984.

加藤聖文, 『「大日本帝国」崩壊—東アジアの1945年』, 中公新書, 2009.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会史』, 未來社, 1989.

小林英夫・柴田善雅・吉田千之輔 編著, 『戦後アジアにおける日本人団体—引揚げから企業進出まで』, ゆまに書房, 2008.

宋炳卷, 『東アジア地域主義と韓日米關係』, クレイン, 2015.

田村吉雄 編, 『秘録大東亞戦史 朝鮮篇』, 富士書苑, 1953.

原朗 編, 『復興期の日本經濟』, 東京大学出版会, 2002.

朴敬珉, 「海外事業者の在外財産の補償要求と植民地認識, 1945-1948年－朝鮮事業者会を中心に」, 『法学政治学論究－法律・政治・社会』108号, 2016.

朴敬珉, 「朝鮮縁故者と日本の対韓国外交の源流－『植民地財産の数字』に収斂した認識と対応, 1945-1953」, 慶應義塾大学大学院博士学位請求論文, 2015.

増田弘 編著, 『大日本帝国の崩壊と引揚・復員』,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2.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米ソ両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若槻泰雄, 『戦後引揚げの記録』, 時事通信社, 1995.

Barak Kushner, Sherzod Muminov ed, *The dismantling of Japan's empire in East Asia: deimperialization, postwar legitimation and imperial afterlife* (Routledge, 2017).

Lori Watt, *When empire comes home: repatriation and reintegration in postwar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Abstract

The Repatriation of Japanese Colonialists from
the Korean Peninsula after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The Issue of Keijō-Nihonjin-Sewakai Assets and
Colonial Perspective

Kyung-Min Park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ate of Japanese colonists in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Japanese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It focuses on perceptions and responses to the protection of colonial assets sort by Keijō-Nihonjin-Sewakai. Having accepted the Potsdam Declaration of August 1945,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dopted a set of measures aimed at helping Japanese settlers to remain in Korea and to protect their assets. Keijō-Nihonjin-Sewakai was an organization set up by colonists to help in this endeavor. The organization cooperated with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and busied itself with these two aims of settlement and asset protection. However, from December 1945, USAMGIK policy hardened in the direction of asset confiscation and compulsory repatriation. The failure of Keijō-Nihonjin-Sewakai in its mi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led to the rise of the 'overseas asset compensation problem' as an issue within Japanese society.

When seen in such a light, the colonial perspec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colonists in Korea becomes clear. The fact that US

forces made a final decision on matters related to occupation policy only after they had occupied the sou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led to much confusion in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and amongst would-be Japanese settlers. Above all else, it was ‘USAMGIK Ordinance No. 33’—which vested all Japanese government and privately-held property within the US zone of occupation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that would be a major area of contention in future negotiations over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 issue of claimed funds that would later prove so contentious in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as inextricably bound up with the problem of Japanese settler property post-defeat in World War II. In this sense, the return of settlers and the Keijō-Nihonjin-Sewakai can be said to form part of the burden of history which has so constrained and stymied improvement in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Key words

Japanese Colonialists in the Korean Peninsula, Keijō-Nihonjin-Sewakai(京城日本人世話会), issue of assets, Japanese perception of colonial rule over Korea, settlement, repatriation